

인천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2320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응원 담당변호사 안성진

피 고 A(개명전 B)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5. 체결된 증여계약을,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 67,086,513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67,086,5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C이 주식회사 D 남동공단지점(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C의 배우자인 E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원장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1	F	22,400,000원	2010. 6. 10.	2019. 8. 28.
2	G	36,000,000원	2019. 2. 28.	2019. 8. 27.

나. C은 2019. 4.경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C을 대위하여 2019. 9. 20. D은행에 합계 51,902,102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인 C과 연대보증인인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차전151958호로 “C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33,353원 및 그 중 51,902,102원에 대하여는 2019. 9. 20.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보 송달일(C은 2020. 7. 2. 송달, E은 2020. 7. 25. 송달)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8. 11. 확정되었는데, 2023. 4. 3.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등 잔존 채권액은 67,086,513원(= 대위변제금 원금 51,902,102원 + 대지급금 436,005원 + 미수손해금 14,697,536원 + 위약금 50,870원)이었다.

라. C의 자녀인 피고는 2020. 2. 25.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2021. 8. 24.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1, 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9. 10. 소외 H, I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을 매매대금 219,91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대금 중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16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2,910,000원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2021. 8. 9.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2부동산을 매매대금 729,993,6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대금 중 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5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9,993,600원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K으로부터 72,999,360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남은 126,994,240원은 여전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돈 합계 252,903,600원(K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보는 경우에는 179,904,240원)은 피고가 어머니인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였던바,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피보전채권액인 67,086,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이 법원의 J은행, 주식회사 L(이하 ‘L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5.

근저당권자 J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6. 5.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관하여 2021. 8. 24.
근저당권자 J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3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2021. 9.
16. 근저당권자 K,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87,599,232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C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일부 금원이 이체된 사실, C과 E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조사보고서(갑 제10호증)에 ‘C과 E이 사업체를 포함한 적극재산을 모두 자녀 B,
M에게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C의 피고에 대한
금전증여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C으로부터 피고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 및 그 지급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계좌(기업은행, J은행)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출금되거나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그 출처를 알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매매대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금원을 C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피고가 대출받아 지급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출처가 C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20.
2. 25. 및 2021. 8. 24. C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C과 피고 사이의 2020. 2. 25.자 및 2021. 8. 24.자
증여계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C과 피고 사이에 위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나

별지